



나주 동창교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

【결정사안】

한국전쟁 중이던 1951년 1월 20일 나주군 세지면 오봉리 동창교 일대에서 오봉리(동창마을)·벽산리(섬말마을) 주민 74명 이상이 국군 제11사단 제20연대 제2대대 제5중대 군인들에 의해 불법적으로 집단총살된 사건에 대하여 진실을 규명한 사례.

【결정요지】

1. 나주 동창교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이하 '나주동창교사건') 조사 결과, 1951년 1월 20일 나주군 세지면 오봉리 동창교 일대에서 오봉리(동창마을)·벽산리(섬말마을) 주민 74명 이상이 국군 제11사단 제20연대 제2대대 제5중대 군인들에 의해 불법적으로 집단총살된 사건의 전말이 규명되었다.

2. 위 사건의 경위를 보면, 1951년 1월 20일 국군 제11사단 제20연대 제2대대 제5중대(이하 5중대)가 세지지서 경찰관, 세지면장, 구국총력연맹원, 지역유지 등을 동반하고 나주군 영산포에서 세지면으로 진주하던 중 노상의 행인 2명을 사살하고, 주민 백형렬을 체포하였다. 뒤이어 5중대는 오봉리(동창마을)와 벽산리(섬말마을)로 진입하여 가가호호 수색하고 주민 200여 명을 동창교 아래 만봉천 개천가로 집결시킨 후 백형렬, 노점순과 그의 아기(당시 3세)를 총살한 다음, 군·경 가족을 제외한 청·장년층 남성들만 가려내어 동창교 인근 신북여관 옆 밭으로 데려가서 전원 총살하였다.

3. 조사결과 확인된 희생자는 선병대·홍석수·백정상·노태섭·조인규·나순채·서범수·조동규·홍두환(이상 다-2596), 김경용·김갑술(이상 다-2596, 다-8903), 정도집(다-6647, 다-10001), 승갑동(다-7219), 황매임·추경화·추양오·추덕임(이상 다-8233), 유우옥(다-8781), 나순길(다-10033), 김연규(다-10308), 조동규(다-10449), 양금득(다-10570), 박장두·이태관·노점순·노점순의 딸·정판일·김만용·이목미·임영오·백형렬(이상 미신청) 등 모두 31명이다. 이 인원과 '나주시 세지면 동창양민학살사건 진상조사추진위원회'에 의해 파악된 별도의 희생자 명단까지 고려하면, 본 사건의 희생규모는 최소 74명에서 최대 140여 명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4. 희생자는 대부분 오봉리·벽산리 주민인 농민들이었고, 일부는 영암군 금정면 등지에서

온 피난민들이었다. 희생자 전원이 비무장 민간인이었고, 노인·여성·어린이·유아도 포함되어 있었음이 조사결과 확인되었다.

5. 이 사건의 발생장소는 ‘낮에는 대한민국, 밤에는 인민공화국’이라고 불렸을 정도로 치안 상황이 불안정하고 빨치산의 출몰이 빈번했던 미 수복지구에 속해 있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5중대는 이 지역 주민들이 공비들에게 포섭되었거나 협조하고 있다는 의심을 품고 청·장년층 남성들을 가려내어 총살한 것으로 보인다. 여러 정황증거는 이 사건이 단순 우발사건이 아니라 의도성이 짙게 개재된 사건이었음을 말해준다.

6. 집단총살에 이르기까지 희생자들의 혐의에 관한 어떠한 확인 절차도 없었고, 처벌에 관한 적법절차도 지켜지지 않았다. 당시 전시 계엄령하에서 민간인의 범죄행위를 처벌하려면 「국방경비법」, 「국가보안법」,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 「계엄하군사재판에관한특별조치령」 등이 적용될 수 있었으나, 이 사건에서는 그 어느 법령도 적용된 바 없다. 긴급한 작전상황이라 할지라도 아무런 확인과정이나 적법절차 없이 비무장 민간인을 임의로 집단총살한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이고, 국제법상으로는 전쟁범죄에 해당한다. 억울하게 죽어간 희생자들의 유족들 또한 지금까지 크나큰 심리적 위축과 경제적 고통 및 사회적 불이익을 겪으며 살아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7. 불법적 민간인희생사건이면서 큰 후유증을 남긴 이 사건의 가해자는 5중대 대원들이고, 그 직접 책임자는 현장 지휘관인 중대장(대위 권준옥)이었다. 또한 법적 및 도의적 책임은 작전상 지휘·명령 계통을 따라 2대대장(소령 유갑열) → 20연대장(대령 박기병) → 11사단장(준장 최덕신)으로 계속 추급하여 물을 수 있고, 최종적으로는 국가에 귀속된다고 할 수 있다. 나주동창교사건의 진실이 이와 같이 규명되었기에, 국가는 사건 희생자 및 유족들에게 성의 있게 사과하고 재발방지 및 명예회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할 것을 권고한다.

【전 문】

【사 건】 다-2596외 11건 나주 동창교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

【신청인】 선병수 외 19명

【결정일】 2007. 6. 12.

【주 문】

위 사건에 대하여 이유 기재와 같이 진실이 규명되었음을 결정한다.

【이 유】



I. 사건 개요

1. 사건 접수 및 처리

선병수 외 9인은 2006년 3월 22~23일 나주 동창교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이하 '나주동창교사건')의 진실을 규명해달라는 진실규명 신청서 2건을 진실화해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이후 2006년 11월 8일~30일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정태균 외 9인이 나주동창교사건의 진실을 규명해달라는 진실규명 신청서 10건을 추가로 접수하였다. 동 사건의 진실규명 신청서는 모두 12건이지만, 희생자 정도집¹⁾에 대한 신청이 중복되었으므로 신청사건 수는 11건이다.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희생자 수는 140여 명이었다.

〈표 1〉 나주동창교사건 진실규명 신청서 접수현황

연번	접수일자	사건번호	신청인	희생자	비고
1	'06.3.22.	2596	선병수 외 8인	선병대 외 135명	유족회대표접수
2	'06.3.23.	2641	홍석진	홍두환	
3	'06.11.8.	6647	정태균	정도집	
4	'06.11.22.	7219	승경일	승갑동 외 1명	
5	'06.11.29.	8233	추남귀	황매임 외 4명	
6	'06.11.30.	8781	유경임	유우옥	
7	'06.11.30.	8903	김만술	김경용 외 1명	
8	'06.11.30.	10001	정태준	정도집	6647과 동일
9	'06.11.30.	10033	나정근	나순길	
10	'06.11.30.	10308	강이순	김연규	
11	'06.11.30.	10449	조영일	조동규 외 1명	
12	'06.11.30.	10570	양천열	양금득	

1) 사건번호 6647·10001의 신청인 정태균, 정태준은 형제지간으로 본 사건에 의해 희생된 아버지 정도집에 대한 진실규명 신청서를 미국과 서울에서 각각 제출하였다.

2. 신청인의 주장

신청인들의 주장에 의하면, 나주동창교사건은 국군 제11사단 제20연대 제2대대 제5중대 (이하 5중대, 중대장 대위 권준옥) 병력 100여 명이 1951년 1월 20일 전남 나주군 세지면 일대에 공비내통 혐의자가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세지면 지서 경찰관, 세지면장, 구국총력연맹원²⁾, 유지 등과 함께 진주하여 세지면 오봉리(동창마을)·벽산리(섬말마을) 동창교 및 인근지역에서 민간인 140여 명을 집단희생시킨 사건이다.

II. 조사의 근거와 목적

선병수 외 19인은 2006년 3월 22~23일, 2006년 11월 8~30일까지 진실화해위원회에 나주동창교사건과 관련한 진실규명 신청서를 접수하였다.

진실화해위원회는 기본법 제2조제1항제3호,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집단희생규명위원회는 2006년 7월 25일 제14차 회의와 2007년 2월 6일 제27차 회의를 열어 신청사건을 검토·심의한 후 조사개시를 의결하였다.

III. 조사방법 및 경과

1. 신청인 조사

진실화해위원회는 1차 접수한 신청인에 대하여 2006년 9월 20일부터 2006년 10월 1일까지 진술청취를 완료하였으며, 2006년 11월 이후 2차로 접수한 신청인에 대하여는 2007년 4월 5일 진술청취를 완료하였다.

2. 참고인 조사

진실화해위원회는 신청인의 진술을 통해 사건의 경위와 피해현황 등을 파악하고 현장목격자, 참전군인, 참전경찰관, 구국총력연맹원, 학생연맹원, 향토사학자 등을 통하여 참고인 진술청취를 진행하였다.

2) 구국총력연맹은 1950년 7월 경 부산에 본부를 두고 면단위까지 조직되었는데 군·경에 필요한 각종 기부금을 걷는 역할을 했다. (서중석, 『조봉암과 1950년대』(하), 2000, 784쪽)



3. 자료조사

-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59)』, 1998.
- 보병제11사단, 『화랑부대전사』, 1986.
- 육군본부전사감실, 『공비토벌사』, 1954.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지역전사연구』, 2002.
- 국방부, 「탄환및탄피감정 결과통보」, 국방부조사본부 총기화재과-257(2006.12.4.)
- 『전남일보』(1951. 5. 24), 광주일보사, 월간 『예향』(1990. 6)
- 나주시 세지면 동창양민학살사건 진상조사추진위원회·유족회 자료집.
- 광주광역시, 『광주시사』, 1995.
- 나주시문화원, 『나주이야기-근·현대편』, 2003.
- 나주시문화원, 『내고향 나주』제13집, 2003.
- 나주동창교사건 증언녹화테이프, 1999.
- 「○○사단의 사라진 작전명령서」,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문화방송, 2000.6.25.
- Periodic Intelligence Report No. 177, 1951. 1. 25. (RG338, K MAG, Adjutant General, Decimal File, 1948 - 53, Box 46, File : Periodic Intelligence Reports, 1951. 1. 2~1951. 4. 5.)

4. 현장조사

진실화해위원회는 2006년 9월과 2007년 3월 목격자 등과 함께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IV. 조사결과

1. 사건의 실재여부

가. 조사내용

본 사건은 지역 언론에 의해 일찍부터 알려졌고 지역 사회단체에서도 진상규명 활동을 벌였지만, 진실화해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목격자의 진술, 참전군인·경찰관 등의 진술, 언론 보도, 총탄, 제적등본 등을 검토하여 사건의 실재여부를 재차 확인하였다.

1) 현장 목격자의 진술

본 사건의 신청인 선병수 외 7명, 참고인 이미순 외 3명 등 총 12명은 모두 본 사건 발생

당시 현장을 목격한 사람들이다. 이들이 진술한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현장 목격자 조사현황

연번	구분	성명 (성별, 당시나이)	진술요지
1	신청인	선병수(남,16세)	사건당일 친구 집에서 총소리를 들었음. 국군 5~6명이 친구 집으로 와서 총 부리를 들이대며 수색을 했는데 나오면 다 죽는다고 했음.
2	신청인	나영근(남,9세)	당시 현장에 있었음. 키도 작고 어려보이는 군인 하나가 대검을 손에 들고 돌아 다니면서 사람들을 골라냈음. 그 사람들을 신북여관 밭에서 총을 쏘 죽였음.
3	신청인	정태균(남,18세)	동창교 다리에 동창·섬말마을 사람들 모두 집결하였음. 백형렬이 죽는 것을 목격하였음. 군인들은 M1 소총과 기관총을 소지하였음.
4	신청인	유경임(여,11세)	동창교 밑에 사람들이 잔뜩 모여있는데 군인들이 돌아다니면서 웬만한 남자들은 “너 나와, 너 나와!!”해서 죽여 버렸음.
5	신청인	김만술(남,13세)	사복경찰이 돌아다니면서 동창교 밑으로 나오라고 해서 가족들과 함께 나갔음. 포승줄에 묶여있던 백형렬이 가장 먼저 죽었음.
6	신청인	정태준(남,7세)	군인들이 사람들을 줄 세워 놓고 차례차례 총을 쏘 죽였음.
7	신청인	나정근(남,11세)	하천변이 뽁뽁할 정도로 사람들이 모여 앉았는데 군경가족을 분리한 뒤 군인 하나가 단도를 들고 다니며 사람들을 골라냈음.
8	신청인	강이순(여,19세)	동창교에 동창·섬말마을 주민 거의 모두 모였음. 그 자리에서 교사부인과 아기를 죽여버리고 남자들을 골라내어 신북여관 밭에서 총살했음.
9	참고인	이미순(여,30세)	동창교에 나가보니 죽은 남자 한 명이 거적에 덮여있고 국군들이 여자 2명을 총으로 쏜 뒤 젊은 남자들을 골라내서 신북여관 뒤편 밭에서 총살했음.
10	참고인	류복남(여,28세)	영산포에서 국군과 함께 세지면으로 들어왔음. 면장, 경찰관 등이 함께 왔고 국군들이 마을사람들을 모아놓고 총살했음.
11	참고인	조기영(남,20세)	사건현장 주변에 숨어서 국군들이 주민들을 총살하는 것을 목격했음. 당시 다도면 쪽에 비행기가 있었음.
12	참고인	김정례(여,20세)	사건 현장에서 군인가족이라고 하여 살았음. 남편은 사건 현장에서 죽었음.

이상 12명의 목격자 진술을 분석하면 동창교에서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이 발생했으며, 본 사건의 가해자는 국군임이 확인된다.



2) 참전군인·경찰관 등의 진술

김○○ 외 12명의 참고인은 5중대 소속 군인 또는 5중대의 주민총살행위에 동원되어 협조한 인물들이다. 이들이 진술한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³⁾

〈표 3〉 참전 군인·경찰관 등 조사현황

연번	구분	성명 (당시나이)	진술요지
1	5중대원	김○○(19세)	민간인 희생은 최덕신 사단장의 책임. 나주 영산강변에서 일어난 민간인 희생은 공군 협조하의 사단작전이었으며 5중대도 참여했음.
2	5중대원	김○○(17세)	5중대본부는 함평군 해보면에 있었음. 민간인 희생에 대해서는 아는 바 없음.
3	5중대원	이○○(21세)	동창교 사건에 대해서 들은 바 없음.
4	5중대원	강○○(20세)	사실 부정 및 진술서 작성 거부.
5	5중대원	홍○○(21세)	사실 부정 및 진술서 작성 거부.
6	5중대원	김○○(20세)	민간인 희생에 대해서는 모르는 일.
7	5중대원	이○○(19세)	민간인 희생에 대해서는 모르는 일.
8	5중대원	박○○(19세)	국군에 의해 민간인이 희생당했을 개연성이 충분히 있음. 당시는 무법천지였음.
9	5중대학도병	이○○(21세)	5중대와 함께 세지면 동창교에 갔었고 주민들을 불러 모았음.
10	5중대소속 학생연맹원	정○○(18세)	학생연맹원 신분으로 5중대와 함께 세지면에 진주하였으며 나주동창교사건을 목격하였음.
11	참전경찰관	최○○(19세)	국군, 경찰, 구련 등이 함께 진주하였고 국군들이 잔인하게 주민들을 학살하였음.
12	구국연맹원	이○○(29세)	국군들과 함께 진주하였는데 식사준비를 위해 다른 마을에 다녀오니 주민들이 죽어 있었음.
13	구국연맹원	염○○(30세)	군인들이 동창, 삼말 가가호호 수색하여 주민들을 나오라고 한 뒤 신복여관 다리 밑 하천변에 집결시킴. 군경가족을 우선 선별하여 제외시키고 8열중대로 약12명씩 세워놓고 1열에 한명씩 군인을 배치함. M1 소총으로 쏘아 죽이는 것을 목격함.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5중대원 김○○, 5중대 학도병 이○○, 나주경찰서 의경 최○○, 5중대 소속 학생연맹원 정○○, 구국총력연맹원 염○○(총무부장) · 이○○(재무부) 등은 5중대 소속이거나 5중대의 주민총살행위에 협조한 인물들이었다. 이들은 조사과정에서 신청

3) 염○○의 진술은 나주시 동창양민학살사건 진상조사 추진위원회에서 제작한 증언녹화테이프에 있는 내용이다.(현재 사망)

인들이 진술한 바와 같이 '1951년 1월 20일 나주군 세지면 동창교 일대에서 국군 제11사단 20연대 5중대가 주민들을 집단총살했다'고 진술하였다. 특히, 5중대장의 당번병이었던 김○○는 사건이 사단작전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진술하였다.⁴⁾ 그러나 김○○를 제외한 5중대 소속 참전군인의 경우 진술을 거부하거나 사건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았다.⁵⁾

3) 1960년 신문보도

1960년 5월 24일자 『전남일보』 기사에 의하면 '4283년 12월 13일 낮, 영산포 쪽에서 국군 화랑부대 1개 중대가 입성하여 약 2백 명의 남녀노소 부락민을 동창교 밑 만봉천 개천가에 모아놓고 군경가족을 제외한 뒤 청장년 138명을 골라내 사살하였다'는 내용이 있다.

이 기사는 김효중 기자⁶⁾가 사건 발생 후 9년 밖에 지나지 않은 때에 현장을 방문하여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던 많은 생존자와 목격자들을 직접 인터뷰하고 쓴 기사로 신빙성이 매우 높다. 위의 기사내용 중 4283년 12월 13일은 양력으로 1951년 1월 20일이고 화랑부대는 국군 제11사단이 창설이후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부대명칭이다.⁷⁾

4) 총탄

본 사건의 유족 이상근은 사건발생 장소에 매장해 두었던 부(父) 이태관의 묘를 이장하면서 유해에 박혀있던 총탄 2발⁸⁾을 2006년 10월 19일 진실화해위원회에 제출하였는데, 그 사진과 국방부의 감식결과는 아래와 같다.

〈표 4〉 탄환 감정서⁹⁾

번호	적용총기	부분명칭	제조국/연도	제원
1	M1 소총	탄두(예광탄)	탄두에는 식별번호가 없으므로 제조국 확인 불가	7.62mm M1소총탄
2	M1 소총	탄두(예광탄)	위와 같음	위와 같음

4) 참고인 김○○의 진술.(2007.2.15)

5) 진실화해위원회는 5중대 소속 참전 군인으로 확인된 김○○, 이○○, 강○○, 홍○○, 김○○, 이○○, 박○○, 김○○ 등 8명을 조사하였다. 그러나 김○○만 유일하게 나주동창교사건의 가해자가 5중대임을 인정하였다.

6) 전남일보에 보도된 기사내용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당시 나주동창교사건을 직접 취재·보도한 전남일보 사회부 김효중 기자의 행방을 탐문 조사하여 소재파악에 성공하였으나 조사관의 면담요청을 거절하였다.

7) 국군 제11사단은 창설초기부터 화랑도의 정신을 계승한다는 뜻에서 화랑부대라고 호칭하였는데 그 연유는 국군 제11사단이 화랑도의 본 고향인 경북 영천에서 창설된 데 기인한다.(보병11사단, 『화랑부대전사』, 1986, 15쪽)

8) 희생자 이태관의 유해 복부와 무릎부위에서 발견됨.(이상근의 총알 입수경위서 2006.10.19)

9) 국방부, 「탄환 및 탄피감정 결과 통보」, 국방부조사본부 총기화재과-257(2006. 12. 4)



〈사진 1〉 유해에 박혀있던 총탄

이를 보면 사건 당시 희생자는 총격에 의해 사망하였고, 가해자는 M1 소총을 사용했던 국군으로 판단된다. 사건 당시 사용한 총기가 M1이라는 것은 현장에 있었던 참전 군인을 통해서도 확인되는 사실이다.¹⁰⁾

5) 제적등본

신청인 20명이 제출한 진실규명 신청서를 근거로 22명의 희생자 제적부와 1명의 미신청 희생자의 제적부를 확인한 결과, 총 6명의 사망일이 사건 발생일과 일치하였다. 특히, 신청인 추남귀의 일가족 4명이 같은 날 사망하였다는 기록은 이들이 자연사(自然死)한 것이 아니라는 증거로 볼 수 있다. 또한 제적등본에서 청·장년 남자뿐만 아니라 어린이와 부녀자도 희생자에 포함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5〉 제적등본 확인 현황

신청인(사건번호)	희생자(사망나이)	성별	제적등본에 기재된 사망일
추남귀 (8233)	황매임(36세) 추경화(15세) 추양오(12세) 추덕임(6세)	여자 남자 남자 여자	1950. 12. 13(음력)
나정근 (10033)	나순길(34세)	남자	1950. 12. 13(음력)
미신청	노점순(21세)	여자	1951. 1. 20

10) 참고인 김○○의 진술(2007.2.15)

나. 소결

현장 목격자의 진술, 참전군인·경찰 등의 진술, 1960년 신문보도, 사건현장에서 발견된 M1 총탄, 제적부의 사망 날짜 등을 종합해 보았을 때, 1951년 1월 20일 전라남도 나주군 세지면 오봉리 동창교 일대에서 주민들이 집단총살당한 것은 의심할 수 없는 사실이다.

2. 희생자의 규모와 신원

가. 조사내용

진실화해위원회는 신청인과 참고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희생자들의 규모와 신원부터 파악하였다. 진실화해위원회는 12건의 진실규명 신청서를 기초하여 신청인과 목격자, 신청인과 신청인, 목격자와 목격자의 진술을 상호 비교하는 동시에 위령비의 성명 기재 여부¹¹⁾, 제적등본 등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사건의 희생자 여부를 판단하였다.

따라서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았더라도 신청인·참고인의 진술이 일치하고 위령비에 이름이 올라있는 경우에는 희생자로 판단하였다. 다만, 신청인 추남귀(사건번호 8233)가 본 사건으로 인해 가족 5명이 희생당했다고 주장하였는데, 그 가운데 추원구는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결과 사건의 희생자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¹²⁾ 그 결과 본 사건의 희생자 중 진실화해위원회가 확인한 희생자는 총 31명이다.

〈표 6〉 진실화해위원회가 확인한 희생자

연번	희생자(사건번호)	성별	나이	거주지	직업	비고
1	선병대(2596)	남자	22세	오봉리(계동)	농업	
2	홍석수(2596)	남자	41세	오봉리(동창)	농업	
3	김경용(2596, 8903)	남자	39세	오봉리(동창)	자영업	
4	김갑술(2596, 8903)	남자	17세	오봉리(동창)	학생	
5	백정상(2596)	남자	18세	죽동리(죽두)	이발사	
6	노태섭(2596)	남자	31세	벽산리(섬말)	농업	

11) 1998년 7월 14일 발족한 나주시 세지면 동창양민학살사건 진상조사 추진위원회에서는 진상규명 활동을 전개하여 96명의 희생자 명단을 작성하고, 추진위원들의 심사를 거쳐 2005년 11월 25일 총 68명의 희생자 성명을 위령비에 기재하였다.

12) 신청인 추남귀(사건번호 8233)는 아버지의 전 부인과 자녀 등 일가족 5명이 본 사건에 의해 희생당했다고 주장했는데 제적등본을 확인한 바, 황매임, 추경화, 추양오, 추덕임 이상 4명은 사망일이 1950. 12. 13.(음력)로 동일하였으나 추원구는 사망일이 1944. 3. 3.이어서 본 사건의 희생자라고 할 수 없다.



연번	희생자(사건번호)	성별	나이	거주지	직업	비고
7	조인규(2596)	남자	34세	벽산리(섬말)	농업	
8	나순채(2596)	남자	38세	오봉리(동창)	농업	
9	서범수(2596)	남자	32세	벽산리(섬말)	농업	
10	조동규(2596)	남자	32세	벽산리(섬말)	농업	
11	홍두환(2596)	남자	31세	오봉리(월대)	농업	영암군에서 피난
12	정도집(6647, 10001)	남자	39세	오봉리(동창)	농업	
13	승갑동(7219)	남자	22세	오봉리(동창)	농업	영암군에서 피난
14	황매임(8233)	여자	36세	오봉리(각정)	주부	영암군에서 피난
15	추경환(8233)	남자	15세	오봉리(각정)	학생	영암군에서 피난
16	추양오(8233)	남자	12세	오봉리(각정)	학생	영암군에서 피난
17	추덕임(8233)	여자	6세	오봉리(각정)	무직	영암군에서 피난
18	유우옥(8781)	남자	43세	오봉리(동창)	농업	영암군에서 피난
19	나순길(10033)	남자	34세	오봉리(동창)	자영업	
20	김연규(10308)	남자	26세	벽산리(섬말)	농업	
21	조동규(10449)	남자	32세	오봉리(동창)	농업	
22	양금득(10570)	남자	30세	벽산리(섬말)	자영업	
23	박장두(미신청)	남자	30세	벽산리(섬말)	농업	참고인의 남편
24	이태관(미신청)	남자	24세	오봉리(동창)	자영업	참고인의 남편
25	노점순(미신청) ¹³⁾	여자	21세	벽산리(섬말)	주부	
26	노점순의 딸(미신청) ¹⁴⁾	여자	3세	벽산리(섬말)	무직	
27	정판일(미신청) ¹⁵⁾	남자	30세	오봉리(열곡)	농업	
28	김만용(미신청) ¹⁶⁾	남자	29세	오봉리(계동)	자영업	
29	이목미(미신청) ¹⁷⁾	남자	42세	오봉리(동창)	모름	
30	임영오(미신청) ¹⁸⁾	남자	59세	벽산리(섬말)	농업	
31	백형렬(미신청) ¹⁹⁾	남자	24세	오봉리(동창)	건축업	

13) 위령비 기재 제작부 사망일자 『전남일보』 조카 노귀임의 진술.(2006.9.20.)

14) 『전남일보』 조카 노귀임의 진술.(2006.9.20.)

1998년 발족한 나주시 세지면 동창양민학살사건 진상조사 추진위원회²⁰⁾(위원장 이상계, 이하 ‘진상조사위’)에서는 진실규명 활동을 전개하여 96명의 희생자 명단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이 명단에는 성명과 신원 등을 밝힐 수 없는 자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어서 ‘진상조사위’ 추진위원들이 연락이 닿는 유족들을 대상으로 개인별 심사를 거쳐 2005년 11월 25일 총 68명의 희생자 성명을 위령비에 기재하였다.²¹⁾

‘진상조사위’가 나머지 희생자들의 성명과 신원 등을 밝히지 못한 이유는 오랜 시간이 경과하여 목격자나 생존자 등이 사망하거나 유가족이 고향을 떠난 지 오래되어 연락이 두절된 경우, 영암군 금정면 등 외지에서 피난 온 희생자들이 다수 있기 때문이다.

진실화해위원회에 본 사건으로 접수된 12건의 신청서 중 2건의 희생자 5명²²⁾의 이름은 ‘진상조사위’의 희생자 명단이나 위령비에 없지만 신청인의 진술, 인우보증서, 제적등본 등을 토대로 조사한 결과, 기존 목격자들이 진술한 바와 같이 영암군 금정면에서 세지면으로 피난 와 있다가 본 사건 때 희생된 사람들로 확인되었다.

희생규모 파악에 있어서,

첫째, 진실화해위원회가 확인한 희생자 31명과 ‘진상조사위’가 개인별로 신원 확인 절차를 거쳐 위령비에 이름을 올린 희생자 68명을 합하면 이 사건 관련 희생자는 99명인데 여기서 중복되는 인원 25명을 제외하면 성명을 확인할 수 있는 희생자는 총 74명이다.

둘째, 사건현장을 목격한 구국총력연맹원 총무부장 염○○의 ‘선별된 청·장년들을 8열중대로 12명씩 세워놓고 96명을 총살했다’는 구체적인 진술²³⁾과 목격자들이 공통적으로 동창교와 인접한 ‘신복여관 옆 밭²⁴⁾에서 90여 명을 총살하고 인근지역 등에서 40여 명을 총살했

15) 위령비 기재 선병대의 진술.(2006.9.21.)

16) 위령비 기재 선병대의 진술.(2006.9.21.)

17) 위령비 기재 정태준의 진술.(2007.3.6.)

18) 위령비 기재 조영일의 진술.(2007.2.28.)

19) 위령비 기재 류복남·조기영의 진술.(2006.11.29.)

20) 나주시 세지면 동창양민학살사건 진상조사 추진위원회는 1998년 7월 14일 유족, 지역 사회단체 관계자 등 34명이 주축이 되어 발족하여 2006년 12월 6일까지 활동하였다.

21) 위령비에 기재된 희생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강자개, 김경용, 김진옥, 김해용, 김오동, 김홍석, 김영기, 김기천, 김연규, 김상길, 김용주, 김갑술, 김수한, 김만석, 김경래, 김경수, 김길바우, 김종국, 김기안, 김용인, 김만용, 나순채, 나순길, 나병무, 나병식, 노광수, 노점순, 노태섭, 문점숙, 박길순, 박장두, 방극선, 백형렬, 백정상, 서문길, 서범수, 선병대, 승갑동, 안명수, 양금득, 임영오, 이목미, 이상출, 이희채, 이돈기, 이달배, 이안호, 이태관, 장남술, 장순권, 전다복, 전팔만, 정도집, 정점덕, 정찬섭, 정찬홍, 정판일, 조봉용, 조인규, 조동규, 조봉한, 한기만, 한귀석, 한바우, 한삼차, 한한포, 홍두환, 홍석수.

22) 신청인 추남귀(사건번호 8233) : 황매인, 추경화, 추양오, 추덕임.

신청인 유경임(사건번호 8781) : 유우옥.

23) 진상조사위 증언녹화테이프, 1999.

24) 전남 나주시 세지면 오봉리 727-18 일대.



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희생자들의 성명을 모두 확인할 수는 없지만 동창교 현장에서의 희생규모는 최소 90여 명 정도로 추정된다.

셋째, 증언과 언론보도에 의하면 동창교뿐만 아니라 깎정굴마을과 인근산야 등에서도 국군들이 약 40여 명의 주민들을 총살하였기 때문에 이날 동창교 및 인근 지역에서 희생된 사람의 전체규모는 최대 140여 명으로 추산된다. 1960년 5월 24일자 『전남일보』 기사에 따르면 희생자는 138명이고, 사건 직후 세지면 오봉리 이장을 역임한 김영대(당시 38세)는 희생자가 145명 이상이라고 진술했다.²⁵⁾

결국, 성명이 확인된 희생자는 총 74명이고, 동창교 현장에서 희생된 인원은 90여 명이며, 이 날 세지면 오봉리·벽산리를 포함한 동창교 일대에서 국군에 의해 희생된 모든 인원은 140여 명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의 희생규모는 최소 74명에서 최대 140여 명으로 추정된다.

본 사건의 희생자들은 앞의 <표 6> 진실화해위원회가 확인한 희생자의 거주지와 직업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건 당시 나주군 세지면 오봉리(동창마을)·벽산리(섬말마을)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던 비무장 민간인들이 대다수였다. 이 중에는 영암군 금정면 등 산간지역에서 피난과 있던 외지 주민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진실화해위원회가 확인한 희생자들의 나이, 성별, 거주지 등을 표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표 7> 진실화해위원회가 확인한 희생자 연령 분포

연령	10세이하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계
인원(명)	2	4	7	14	3	1	31
비율(%)	6	13	23	45	10	3	100

<표 8> 진실화해위원회가 확인한 희생자 성별 분포

성별	남자	여자	합계
인원(명)	27	4	31
비율(%)	87	13	100

25) 진상조사위 증언녹화테이프, 1999.

〈표 9〉 진실화해위원회가 확인한 희생자 거주지 분포

성별	오봉리	벽산리	기타	합계
인원(명)	20	10	1	31
비율(%)	65	32	3	100

위의 〈표 7〉 내지 〈표 9〉에서 확인 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진실화해위원회가 확인한 희생자는 20~30대가 대다수이고, 10세 이하의 어린이도 2명이 포함되어 있었다. 성별로는 남자가 대부분이지만 여자도 4명이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희생자들은 나주군 세지면 오봉리와 벽산리에 거주하던 주민들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1998년 ‘진상조사위’가 확인한 희생자 연령과 성별 분포는 아래와 같다.

〈표 10〉 진상조사위 희생자 연령 분포

연령	10세이하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	모름	계
인원(명)	1	8	11	17	9	2	3	45	96
비율(%)	1	8.3	11.5	17.8	9.4	2.1	3.1	46.8	100

〈표 11〉 진상조사위 희생자 성별 분포

성별	남	여	계
인원(명)	90	6	96
비율(%)	94	6	100

‘진상조사위’의 희생자 연령분포도 30대가 대다수이고, 10세 이하의 어린이가 1명 포함되어 있다. 성별 분포도 역시 남자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진실화해위원회가 파악한 희생자들의 연령별·성별분포와 비슷하다.

결국, 사건의 희생자는 대부분 나주군 세지면 오봉리·벽산리에 거주하고,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을 할 연령대인 청·장년층의 남자들이었다. 그리고 일부 어린이, 노인, 여성 등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는 사건 당시 청·장년 남자들이 주로 총살되었다는



조영님, 나정근, 강이순 등의 진술과 일치한다.²⁶⁾

나. 소결

희생자들은 모두 나주군 세지면 오봉리(동창마을)·벽산리(섬말마을)에 거주하던 민간인들이었다. 당시 오봉리와 벽산리에는 현지 주민을 비롯해 영암군 금정면 등 산간지역에서 들어온 피난민들이 다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희생자들은 대부분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을 할 연령대인 청·장년층의 남자들이었지만, 노인·부녀자·학생·유아 등도 포함되어 있었다. 희생 규모는 진실화해위원회에서 확인한 인원 31명을 포함한 최소 74명에서 최대 140여 명으로 추정된다.

3. 희생경위

가. 조사내용

1) 희생과정

1950년 10월부터 사건 당시 나주를 비롯한 전남 지역의 공비토벌작전은 국군 제11사단 20연대가 담당하였다. 사건 당시 국군과 함께 나주군 세지면으로 들어 온 경찰관²⁷⁾·구국총력연맹원²⁸⁾·마을주민²⁹⁾ 등의 진술에 따르면, 1951년 1월 20일 오전 9시 경 국군 100여 명은 세지면 경찰지서 소속 경찰관, 면장, 지역유지, 구국총력연맹원 등과 함께 나주군 영산포에서 출발하여 세지면으로 진주하였다.

국군은 세지면으로 오던 중 길 가던 노인 등 민간인 2명을 사살하고 동행하던 세지면장이 백형렬을 불순분자로 지목하자 그를 체포하였다. 국군은 세지면으로 들어오면서 일부 병력을 인근지역으로 분산 배치하고 나머지 병력은 세지면 지서 순경 강○○·이○○·손○○ 등³⁰⁾과 함께 가가호호 수색하여 “강연이 있으니 동창교 밑으로 모이시오”라고 하면서 강압적으로 불러냈다.

국군은 세지면의 동창·섬말마을 주민 200여 명을 집결시킨 다음 노점순과 그 아기를, 체포해 온 백형렬을 주민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총살하였다.

26) 신청인 조영님의 진술(2006.9.20); 신청인 나정근의 진술(2007.3.9); 신청인 강이순의 진술(2007.3.15.)

27) 참전경찰관 최○○ 진술(2007.5.2.)

28) 구국총력연맹원 이○○ 진술(2006.11.29., 2007.5.2.), 구국총력연맹원 엽○○ 증언(1999.1.18.)

29) 현장목격자 류복남 진술(2006.11.29., 2007.3.15.)

30) 전남지방경찰청 인사기록·경력증명 등을 통해 강○○, 이○○, 손○○ 등은 사건 당시 나주경찰서 소속 경찰관(순경)임을 확인하였다. 강○○은 1992년, 손○○은 1994년에 사망하여 진실화해위원회가 조사 할 수 없었으며 이○○은 전남지방경찰청에서 제공한 기록이 부실하여 소재를 파악하지 못했다.

현장 목격자 류복남의 진술에 의하면 “백형렬은 세지면으로 오는 길목의 어느 주막에 있다가 세지면장이 불순분자로 지목하여 국군들에게 체포되었다. 백형렬은 마을에 ‘빨갱이’ 또는 ‘공비협력자’ 등이 누군지에 대해서 고문·취조당하다가 총살되었고, 노점순은 업고 있던 아기와 함께 총살당했다”³¹⁾고 한다.

또 다른 목격자 김만술은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국군과 사복경찰 이○○·강○○이 가가호호 돌아다니며 동창교 밑으로 나오라고 했다. 백형렬이 포승줄에 묶여 있다가 가장 먼저 죽었다. 백형렬은 화랑부대(11사단)가 진주하면서 체포한 사람인데 인공시절에 어떤 일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국군이) 백씨에게 무언가 취조하다가 죽여 버렸다. 박영만의 부인(노점순)이 아기를 업고 있었는데 아기와 함께 죽었다. 노점순과 아기가 죽은 이유는 인민군 진주시 교사들이 동원되어 아이들에게 노래를 가르쳤는데 남편 박영만이 교사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군인 하나가 나를 불러내서 착검한 총부리를 갖다 대며 ‘여기 빨갱이들 자주오지? 바른대로 말 안하면 혼난다!!’고 했다”³²⁾

이어 국군은 군경가족을 분리한 뒤 청·장년층의 남자들을 골라내어 신북여관 옆 밭으로 끌고 가 8열중대로 12명씩 세워놓고, 국군 20여 명이 M1 소총 등으로 90여 명을 총살하였다.³³⁾

인근지역에 배치된 국군들은 빨감을 마련하고 있던 주민 등을 총살하였는데, 참전경찰관의 진술에 따르면³⁴⁾ 그 중에는 “갓을 쓰고 나이가 많은 노인 4명이 자신들이 늙어서 죽으면 쓸 묘 자리를 보러 나왔다가 사살당한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또한 조사결과 세지면 동창교 인근의 산간마을인 깎정굴마을에 분산 배치된 국군 병력이 수색 중 신청인 추남귀의 일가족 4명을 총살하였다. 이러한 사실로 보아 당시 국군은 산에 있던 주민들을 모두 빨치산 연락책 또는 공비협조자 등으로 간주하고 무차별 사살한 것으로 추정된다.

2) 희생이유

조사내용을 토대로 본 사건이 발생한 당시의 상황을 정리해보면,

첫째, 국군은 세지면을 그냥 통과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세지면 오봉리(동창마을)를 목적지로 설정하고 지역 경찰 등을 대동하여 마을에 진주하였다.

둘째, 사건 당시 국군이 민간인을 집단총살한 행위는 적을 공격하거나 기습공격을 당한

31) 현장목격자 류복남 진술녹음·녹화(2006.11.29., 2007.3.15.)

32) 신청인 김만술의 진술.(2007.3.13.)

33) 구국총력연맹원 엮○○의 진술에 따르면, 국군은 신북여관 다리 밑 하천변에 집결시킨 주민 중에서 군경가족을 제외시키고 선별한 청·장년을 신북여관 옆 밭에 8열중대로 약 12명씩 세워놓고 1열에 1명씩 군인을 배치하여 M1 소총으로 쏘아 죽이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한다.(진상조사위 증언녹화테이프, 1999.1.18.)

34) 참전경찰관 최○○ 진술.(1999.1.25., 2007.5.2.)



작전 또는 교전 상황에서 발생한 일이 아니었다.

셋째, 본 사건에서 국군은 산에 묘 자리를 보러 나왔던 노인과 길 가던 행인, 여자와 유아 들까지 무차별적으로 총살하기도 하였다.

넷째, 사건 당시 국군과 관할 경찰, 구국총력연맹원, 마을유지 등을 함께 대동하고 진주했다는 점에서 이들은 서로 협조관계였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국군은 마을진주 및 주민 집결, 총살 등 전 과정에서 지역 경찰 등의 협조를 얻었다.

다섯째, 사건 직전에 5중대가 주도한 또 다른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인 함평군 월야면·해보면·나산면 등지의 사건 등과 비교해 보았을 때 사건의 전개과정이나 주민 총살의 방법 등이 대단히 유사하다.³⁵⁾

여기에서 공비토벌을 위해 투입된 국군 제11사단 20연대 2대대 5중대가 왜 나주군 세지면 오봉리(동창마을)·벽산리(섬말마을) 주민들을 집단총살 하였는가 하는 점이 의문으로 제기된다.

가장 큰 이유는 이 지역의 지리적인 조건과 연관된 것으로 판단된다. 세지면 동창·섬말 마을은 인근의 국사봉과 인접한 평야지역으로 산 중에 은거해 있던 빨치산들의 보급물자 확보에 유리한 지역이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또한, 사건 발생 장소이자 세지면 소재지인 오봉리 동창마을은 경찰들이 낮에만 있다가 밤에는 철수하는 상황이었다. 당시 세지면은 사실상 치안공백 상태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이 지역은 '낮에는 대한민국 밤에는 인민공화국'의 상황이 지속되어 빨치산의 식량 조달 근거지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신청인 조영일은 “우리 마을 주변에 산이 많은데 당시 반란군들이 산에 숨어 있다가 마을로 밤마다 식량을 구하러 왔다. 국군이 그 정보를 입수하고 우리 마을로 와서 주민들을 죽인 것 같다”³⁶⁾고 진술하였으며,

신청인 홍수동은 “세지면에 살고 있는 누군가가 ‘동창 쪽에 좌익(빨갱이)들이 많이 있다’라고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군들이 진주하여 사람들을 죽였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신고를 한 그 사람도 국군들에게 총살을 당했습니다”³⁷⁾라고 진술하였다.

또 신청인 서형달은 “밤손님 등이 와서 쌀이나 먹을 것 등을 가져간 것으로 알고 있다. 낮에는 군경, 밤에는 밤손님들에게 시달렸다”³⁸⁾ 진술하는 등 세지면 오봉리(동창마을)·벽산

35)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김영택, 『한국전쟁과 함평양민학살사건』, 사회문화원, 2001.을 참고.

36) 신청인 조영일의 진술.(2007. 2. 28.)

37) 신청인 홍수동의 진술.(2006. 9. 20.)

38) 신청인 서형달의 진술.(2006.10.19.)

리(섬말마을)는 빨치산의 식량 조달 근거지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점이 확인된다. 그러나 이 지역 주민들이 생존을 위해서 빨치산에게 협력한 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모두 공비내통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사건 발생 당시뿐만 아니라 이후 1951년 후반까지도 면사무소와 경찰지서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없었다는 진술로 볼 때 당시 세지면의 상황이 그 만큼 불안정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³⁹⁾ 이러한 상황에서 수복 후 이 지역에 처음 진주한 국군은 세지면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경찰·유지 등과 함께 영산포에서 처음으로 마을에 진주하였다.

1960년 5월 24일자 『전남일보』는 인민군 퇴각 후 세지면에 국군이 처음으로 진주하던 그 날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

“인민군이 철퇴한 뒤라 언제고 아군의 진주가 있으리라는 걸 명심하면서 나주군 세지면 동창부락민들은 초조한 가운데 긴장해 있었다.”

국군이 진주하여 초등학교 교사 박영만의 부인 노점순과 그 아기를 총살하고, 이어 청·장년 남자만을 선별하여 총살한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라 사전에 이 지역에 대한 모종의 정보에 바탕을 둔 것으로 추정 할 수 있다. 즉, 국군이 세지면 오봉리(동창마을)·벽산리(섬말마을)를 선택하여 진주한 이유는 이 동네가 빨치산의 보급기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경찰관, 지역유지 등의 정보보고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국군이 세지면 지서 경찰, 세지면장, 구국총력연맹원, 지역 유지 등과 함께 마을로 들어왔다는 점, 국군이 세지면으로 진주 도중 백형렬을 체포하여 포승줄에 묶어 온 사실, 주민들 중에서 노점순을 선별하여 우선 총살한 점 등이 그것을 뒷받침 해준다.

참고인 정○○와 이○○의 진술을 종합해 보면,⁴⁰⁾ 공비토벌작전 지역 내의 정세 등은 해당 지역의 구국총력연맹원을 비롯한 반공우익단체 인사로부터 경찰, G-241), S-242) 등에 전달되었고,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국군과 경찰은 공비에게 협력한다고 판단되는 지역 주민들을 총살할 방침을 세웠을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국군은 지역 내 경찰·우익인사들의 제보를 근거로 나주군 세지면 지역에 공비내통 혐의자가 있다는 판단을 하고 토벌작전 계획을 수립하였을 것이다. 지역의 반공·우익인사들이 국군에게 지역의 불순분자 명단 등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인민군 점령시기 지방좌익 등으로부터 피해를 입었던 개인적인 감정이 나 보복 심리도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추정된다.⁴³⁾

39) 참전경찰 최○○의 진술.(2007.5.2), 현장목격자 조기영의 진술.(2006.11.29, 2007.3.15.)

40) 학생연맹원 정○○의 진술.(2006.7.20, 2007.5.1.), 구국총력연맹원 이○○의 진술(2007.5.2.)

41) 사단급 이상의 정보 참모.

42) 여단급 이하의 정보 참모.

43) 참고인 이○○, 류복남, 조기영 등의 진술에 의하면 세지면 구국총력연맹 위원장 나○○는 지역의 대표적인 반공·우익인사로



당시 공비토벌작전에 투입된 병사들은 언제 어디서 기습을 당할지 모른다는 극도의 불안과 긴장감에 시달려야 했다.⁴⁴⁾ 이처럼 당시 치안이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국군은 젊은 청·장년층 남자들이 빨치산에 협력하고 있거나 포섭되어 있다는 혐의를 가지고 총살했을 개연성이 크다. 그러나 국군이 어떤 과정을 거쳐 이 마을에 진주하여 주민들 중 청·장년들을 총살하기로 결정하였는지, 국군과 경찰 및 우익단체와의 협의 내용이 어떠한지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

나. 소결

국군은 1951년 1월 20일 나주군 영산포에서 세지지서 경찰관, 면장, 유지, 구국총력연맹원 등과 함께 세지면으로 진주하였다. 국군과 경찰 등은 가가호호 수색하여 주민들을 동창교 밑으로 강제집결 시킨 뒤, 먼저 백형렬, 노점순과 그 아기 등을 총살하고 근경가족을 제외한 청·장년층의 남자들을 동창교와 인접한 신복여관 옆 밭으로 끌고 가 집단총살하였다.

국군이 나주군 세지면 동창교와 그 일대에서 민간인을 집단 희생시킨 이유는 첫째, 이 지역이 지리적으로 공비들의 식량 조달에 용이한 조건을 갖추고 있어 밤에는 공비들이 마을에 출몰하여 식량을 획득했고, 둘째, 치안이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지역 청·장년층 남자들이 빨치산에 협력하거나 포섭되었다는 혐의 아래 이들을 선별하여 총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공비토벌을 명분으로 동창교와 인근지역에서 청·장년들을 집단총살한 사건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국군 측의 어느 정도 의도성이 개입되어 있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국군이 어떤 과정을 거쳐 이 마을에 진주하여 주민들 중 청·장년들을 총살하기로 결정하였는지, 국군과 경찰 및 우익단체와의 협의 내용, 지역 경찰이나 우익들의 제보 내용이 어떠한지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

4. 가해주체와 지휘·명령계통

가. 조사내용

1) 가해주체

본 사건의 직접적인 가해부대는 국군 제11사단 20연대 2대대 5중대였다. 이에 대해서는 참고인들의 진술, 당시 함평군 해보면 학생연맹원 신분으로 5중대와 함께 공비토벌작전에

인민군 점령시기 좌익들에 의해 집이 전소되었고, 세지면 사찰계 형사로 평판이 좋지 않았던 강○○은 지방좌익들에게 갖은 고문과 폭행을 당한 후 간신히 살아났다고 한다. 그리고 학생연맹원 정○○은 학생연맹이 좌익에 대한 보복행위를 했다는 진술을 하였다.

44) 참고인 김○○ 진술.(2007.2.15.)

동원되었던 정○○, 5중대 학도병 이○○, 5중대원 김○○ 등의 진술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학생연맹원 정○○은 “제가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5중대가 진주했는데 나주경찰 측의 대접도 좋지 않았습시다. 나주에 5중대가 들어가서 나주경찰서에서 하룻밤을 묵고 다음날 세지면으로 들어가서 마을 사람들을 모두 동창교로 집합시켜 사람들을 죽여 버린 것입니다”⁴⁵⁾라고 진술하였으며, 5중대 학도병 이○○은 “(나는) 5중대와 함께 세지면 동창교에 갔었고 주민들을 불러 모았다”⁴⁶⁾라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5중대원 김○○은 “그때(나주동창교사건) 작전은 공군 협조하의 사단작전이였다. 자갈밭에 모아놓고 사람들을 죽였다. 월악리⁴⁷⁾와 영산강변⁴⁸⁾ 작전 때 사람들을 사정없이 죽였다.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다 나오라고 해서 M1으로 총살했다.⁴⁹⁾ 희생인원은 기억이 안 난다. 그때 면장도 왔었다. 나는 항상 중대장과 함께 다녔기 때문에 소대에서 일어난 일은 모른다. 사람들 모이라고 한 것 중 내가 아는 건, 월악리하고 영산강 옆에 밖에 없다”라고 진술했다.⁵⁰⁾

위 참고인들의 진술에서 나타난 사건 정황은 군의 공식기록을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본 사건 발생 25일 후인 1951. 2. 14. 국군 제11사단 20연대장(대령 박기병)이 국군 제11사단장(준장 최덕신)에게 보고한 보11사20연작교을발제16호 연대역사자료보고지건(步11師20聯作教乙發第16號 聯隊歷史資料報告之件)⁵¹⁾을 보면, ‘국군 제11사단 20연대 일부 병력(연대본부 수색소대, 제2대대 제5중대, 제3대대 11중대)은 연대작명 제5호(1951. 1. 20)에 근거, 공군지원 하에 나주군 금불사 및 암천리 소탕전(羅州郡 金佛寺 及 岩川里 掃蕩戰)’을 실시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 보고문서에는 ‘나주군 다도면 일대 소탕전’, ‘폭격지 및 피해표’를 기록한 작전 요도(要圖) 2매⁵²⁾가 첨부되어 있다.(〈별첨자료〉 참고)

이 문서에 기초하여 편찬된 『공비토벌사』·『화랑부대전사』·『지역전사연구』 등에도 ‘나주군 다도면 일대 소탕전’을 언급하면서 금불사(金佛寺)⁵³⁾ 또는 전불사(全佛寺)⁵⁴⁾를 언급

45) 학생연맹원 정○○ 진술.(2006.7.20.)

46) 5중대 학도병 이○○의 진술.(2007.2.15.)-전화담문

47) 함평군 월야면 남산포 사건을 지칭함.

48) 나주동창교사건을 지칭함.

49) 유족 이상근이 진실화해위원회에 제출한 총탄도 M1이었다.

50) 참고인 김○○의 진술.(2007.2.15.)

51) 육군본부, 『韓國戰爭史料』 59, 1998, 921쪽.

52) 육군본부, 『韓國戰爭史料』 59, 1998, 950쪽.

53) 육군본부전사감실, 『共匪討伐史』, 1954, 49쪽.

54) 보병11사단, 『花郎部隊戰史』, 1986, 178쪽;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지역전사연구』, 2002, 114쪽.



하고 있는데 금불사 또는 전불사라는 사찰 명칭은 사건 당시 및 현재까지도 나주시 다도면 뿐만 아니라 나주지역에 존재하지 않는 사찰이다.⁵⁵⁾ 위 보고문서에 첨부된 작전 요도에도 금불사 대신 불회사가 기재되어 있고 작전 요도와 현재 행정지도를 비교해 보아도 불회사의 위치가 서로 일치한다. 그러므로 당시의 기록상에 보이는 금불사는 나주시 다도면에 있는 불회사(佛會寺)⁵⁶⁾를 잘못 기재한 것이다. 그리고 나주시 다도면에는 암천리(岩川里)라는 지명은 없고 암정리(岩亭里)가 존재하므로 이것 또한 당시 기록의 오기(誤記)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이 국군 제11사단의 ‘나주군 다도면 불회사 및 암정리 일대 소탕전’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에서 간행한 『지역전사 연구』에서는 “1951년 1월 20일 다도면 암천리 소탕전을 실시한 작전 지역이 본 사건 지역과 5Km 이격되어 있어 장소가 일치하지 않다”고 하고 있으나⁵⁷⁾, 이 보고서의 <별첨자료 2> ‘나주군 다도면일대 소탕전 요도 1’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군 병력은 봉황지서를 출발하여 세 갈래로 나뉘어 다도면으로 진주하였으며, 이 중 제일 왼쪽 한 갈래의 병력이 나주군 세지면에 도착했을 가능성은 매우 크다.

그 근거는 5중대와 함께 공비토벌작전에 참가했던 학생연맹원 정○○의 진술에 따르면⁵⁸⁾ 본 사건 발생 직전에 5중대는 함평군 해보면의 중대본부에서 태청산, 내장산 등 장성 지역으로 작전을 나갔다가 영암 월출산에 출몰하는 공비를 토벌하라는 명령을 받고, ‘장성 → 송정리(1박/도보) → 나주군 영산포(1박/도보) → 세지면(주민총살/1박) → (영산포 경유)광주 20연대 본부’ 순으로 진주하여 주민들을 집단총살하였다는 것이다.⁵⁹⁾

그러나 1954년 육군본부에서 편찬한 『공비토벌사』등에 의하면 ‘나주군 다도면 일대 소탕전’을 벌인 날짜가 1951년 1월 24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작전이 본 사건을 직접적으로 지칭하는지는 확정할 수 없다.

주한미군사고문단(KMAG) 정보보고서는 본 사건의 발생일인 ‘1951년 1월 20일 유엔 공군이 공비들의 주요활동 근거지인 (전남 장흥군) 유치면 일대에 항공 폭격을 가하여 511명의 공비를 사살하고, 11사단의 후속작전으로 123명의 공비를 추가로 사살하는 등 총 634명

55) 나주시청, 조계종 총무원, 불회사 등과 나주지역 주민을 통해 한국전쟁시기 금불사 또는 전불사의 존재를 수소문하였지만 확인할 수 없었다.

56) 불회사는 현재 나주시 다도면 마산리999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고찰(古刹)로 창건 시기는 384년(침류왕 1년) 또는 367년(근초고왕 22년)인데 원래는 불호사로 불리다가 1808년(순조 8년) 무렵부터 지금과 같은 불회사로 절 이름이 바뀌었다. 불회사 홈페이지(<http://www.bulhoesa.org/>) 참고.

57)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지역전사연구』, 2002, 114쪽.

58) 학생연맹원 정○○의 진술녹음, (2007.5.1.)

59) 김영택 또한 5중대가 함평에서 주민들을 집단학살하고 1951년 1월 16일 해보를 떠나 장성을 거쳐 나주 쪽으로 진출하였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영택, 『한국전쟁과 함평양민학살사건』, 사회문화원, 2001, 141~149쪽.

의 공비를 사살했다'고 기록하고 있다.⁶⁰⁾ 장흥군 유치면은 나주동창교사건 발생지역에서 다도면 쪽(동남쪽)으로 약 15Km 떨어진 곳인데, 사건 당일 다도면 방향에서 들려오는 비행기 폭격소리를 듣거나 비행기를 목격했다는 여러 명의 신청인과 참고인의 진술이 있어서, 국군 11사단이 후속작전으로 사살했다는 공비 123명이 이 사건의 희생자일 개연성은 있으나 확정할 수는 없다.⁶¹⁾

그러나 『공비토벌사』를 비롯하여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 생산된 그 어떠한 기록에서도 국군 11사단이 1951년 1월 20일 위와 같은 작전을 실시했다는 기록은 찾아 볼 수 없다. 조사결과 1950년 말~1951년 초에 생산된 국군 11사단 작전명령 문서와 1951년 1월 11일~20일 기간 동안의 작전일지도 발견할 수 없었다. 이것은 상당한 의혹사항인데, 1951년 거창사건 이후 국군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기록을 고의로 은폐·조작하거나 폐기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이상의 진술과 기록을 종합해 보았을 때, 국군 11사단 20연대 5중대가 1951년 1월 20일 사건 지역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수행했다는 것을 직접적인 기록으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5중대가 사건 전후에 나주군 세지면 인근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작전을 수행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로 판단된다.

2) 지휘·명령계통

사건의 가해부대는 각종 진술과 기록을 통해서 국군 11사단 20연대 2대대 5중대로 확인되었다. 또한, 사건의 직접적인 책임자는 5중대장(대위 권준옥)이다.⁶²⁾ 그러나, 상부의 지침이나 명령 또는 묵인 없이 현지 중대장의 독자적인 권한으로 최소 74명의 많은 주민을 집단총살 했다고 보기는 힘들다. 당시 5중대장 권준옥의 당변병이었던 김○○도 사건이 사단작전에 의해 실시되었음을 진실화해위원회에 진술하였다.⁶³⁾ 본 사건의 가해부대인 국군 11사단의 지휘·명령계통은 사단장 최덕신 준장 → 연대장 박기병 대령 → 대대장 유갑열 소령 → 중대장 권준옥 대위다.

60) Periodic Intelligence Report No, 177, 1951. 1. 25. (RG338, KMAG, Adjutant General, Decimal File, 1948-53, Box 46, File : Periodic Intelligence Reports, 1951. 1. 2.~1951. 4. 5.)

61) 신청인 나정근 진술(2007.3.9), 신청인 승경일 진술(2007.3.15.), 참고인 조기영 진술(2006.11.29., 2007.3.15.), 참고인 광부만 진술(2006.10.26.)

62) 진실화해위원회가 입수한 권준옥의 자력기록표에서는 권준옥이 5중대장으로 발령 받은 내용은 누락되어있다. 그러나 1960년 5월 20~21일자 『한국일보』; 1960년 6월 국회 양민하살 진상조사반의 기록(권준혁); 국방부 군사편찬위원회, 『지역전사연구』, 2002; 국방부 군사편찬위원회, 『민군 관련사건 연구 논문집』, 2006 등의 기록과 5중대장 당변병 김○○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본 사건 당시 5중대장은 권준옥이다. 권준옥은 1928년 생으로 육군사관학교 7기 출신이다. 그의 자력기록표에 의하면 1948년 11월 소위로 임관 후 25연대와 제5훈련소 등에서 근무하다가 1950년 10월 경, 국군 11사단 20연대로 배속 받아 호남지구공비토벌작전을 현장에서 직접 수행하였다. 이때의 공(功)으로 충무무공훈장을 수여받은 권준옥은 1961년 중령으로 전역하고 이듬해 권영구로 개명(改名)하였다. 그는 1990년 서울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63) 참고인 김○○ 진술녹화(2007.2.15.)



사건과 관련하여 사단장 최덕신은 군의 지휘체계상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가 지휘하는 국군 11사단은 거창·함양·산청·고창·순창·남원·함평·나주 등 경상도와 전라도의 광범위한 지역에서 공비토벌 작전을 수행하면서 수 많은 민간인을 희생 시킨 것으로 알려져 있다.⁶⁴⁾

국군 11사단이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함에 있어서 갖고 있었던 방침은 사단장 최덕신이 작전결과를 총참모장에게 보고하면서 사용한 견벽청야(堅壁淸野) 작전이라는 개념을 통해 알 수 있다.⁶⁵⁾

국군 11사단이 공비토벌작전에 이러한 개념을 작전지역에 적용하면서 많은 민간인 희생 사건이 발생하였다. 본 사건이 발생하기 직전 나주군과 인접한 함평군에서도 국군 11사단에 의해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이 발생한 사실이 있다.⁶⁶⁾ 기존 증언과 연구에 의하면 나주·함평에서 일어난 각각의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의 공통점은 모두 국군 11사단 20연대 2대대 5중대에 의해 발생했고 시기적으로도 비슷하다는 것이다. 특히, 함평군 월야면·해보면·나산면 사건과 나주동창교사건에는 가해부대인 국군 11사단 20연대 5중대가 공통적으로 개입되어 있다.⁶⁷⁾

5중대 병력은 유엔군의 인천상륙작전 이후 형성된 제2전선 지역의 산간지역에서 활동하던 빨치산 세력을 소탕하기 위해 투입되었으나, 전투경험이 전혀 없는 나이 어린 군인들이 대부분이었다.⁶⁸⁾ 지방좌익들은 산간지역 및 지역사정에 밝은 반면 국군은 지역 경찰 및 우익단체 등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사실상 작전을 수행하지 못 할 정도로 악조건에 처해 있었으며, 민폐도 많이 끼쳤다. 이러한 상황은 국군의 사기를 떨어뜨리기에 충분했고, 현지의 지휘관은 잔인함과 폭력성을 주입시켜 공비토벌의 전과를 극대화하려는 전략을 구사했을 가능성이 크다. 일부 참고인들이 진술하듯이 5중대장 권준옥의 평소 행동으로 보아 이러한 사건

64) 김영택, 『한국전쟁과 함평양민학살사건』, 사회문화원, 2001, 17쪽.

65) 보11사작교을발제22호(1951.4.10), 『한국전쟁사료』 59권, 172쪽 ‘견벽청야(堅壁淸野)’라는 말은 중국 한나라 때 하승천이 변경지역 방어를 위한 이론으로 『안변론(安邊論)』에 나오는 말인데 “성(城) 밖을 말끔하게 치워버리고 성을 굳게 지키면서 적이 오길 기다린다(堅壁淸野 以後其來)”라는 구절에 근거하고 있다. 『우리말큰사전』, 두산동아, 1999 ; 김영택, 『한국전쟁과 함평 양민학살』, 사회문화원, 2001, 50쪽에서 재인용.

66) 함평군 월야·해보·나산면 민간인집단희생사건(1950.12.6.~1951.1.14.)

67) 문화방송, “○○사단의 사라진 작전명령서”, 『이제는 말할 수 있다』, 2000. 6. 25. 에 방영된 5중대장 당번병 김○○의 증언에 의하면, 함평군 월야면 남산피사건(1950.12.7.) 당시 “사단장 최덕신, 연대장 박기병, 대대장 유갑열, 중대장 권준옥, 김○○는 5중대 권준옥 중대장 연락병. 중대장이 대대장한테 명령을 받았는지 뭘지 모르겠지만, 소대장한테 전달하기를 저 부락에 나이 많은 노약자는 빼 버리고, 가운데 든 사람은 총살감이다. 소대장에게 연락을 해라”라고 했다고 한다. 이 증언은 국군 11사단에 의한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이 명령계통에 의해 하달되고 집행되었음을 확인해 주는 것이다. 최소한 국군 11사단장은 작전 지역 내의 민간인이 집단총살당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68)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조사한 5중대원은 대부분 19~21세였는데 제주훈련소에서 기본교육을 마치고 바로 호남지구 공비토벌작전을 위해 투입되었다.

을 일으킬 개연성은 매우 컸다고도 판단된다.

5중대장 당번병 김○○와 5중대에 동원되어 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한 함평군 해보면 학생 연맹원 정○○의 진술에 의하면 5중대장 권준옥의 행동에는 많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아래는 정○○의 진술내용 중 일부이다.

“(권준옥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부하들도 총을 쏘아 죽이고 그랬습니다. 중대병력 이동시에 낙오하거나 잘 따라오지 못하면 죽여 버리고 1사단 소속 패잔병 11명이 해보 5중대본부로 찾아 온 적이 있는데 패잔병들 말에 신뢰가 안 간다고 하면서 모두 죽여 버렸습니다. 그리고 윤○○(선무공작대장)은 여자들을 불러와서 권준옥에게 여러 가지 봉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당시 5중대 군인들은 아주 형편없는 저질군인들이 많았는데 여자들도 많이 건드리고 민폐를 많이 끼쳤습니다.”

그러나 당시 5중대가 상부의 대대장, 연대장, 사단장으로부터 어떤 작전명령을 하달 받았는지, 그리고 5중대의 행위가 상부의 명령에 의한 것인지 중대장 단독 결정으로 이루어진 것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

나. 소결

진술과 자료를 통해 확인된 사건의 현장지휘 책임자는 국군 제11사단 20연대 2대대 5중대장(대위 권준옥)이다. 사건 당시 국군 11사단의 지휘·명령계통은 사단장 최덕신 준장 → 연대장 박기병 대령 → 대대장 유갑열 소령 → 중대장 권준옥 대위로 이어진다. 넓게 보아 본 사건은 국군 11사단장의 견벽청야 작전 방침에 따라 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면서 일어난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으로 판단되지만 구체적인 지휘·명령 사실은 확인 할 수 없다.

5. 법률적 검토

가. 조사내용

전시 중 공비토벌작전을 수행 중이던 국군 11사단 20연대 5중대가 비무장 민간인을 집단 총살한 행위는 적법한 행위였는지 따져 볼 필요성이 있다. 우선, 사건의 희생자들이 교전 중 사망한 전투원이 아닌 것은 자명하다. 전시 중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국가는 적에게 협력한 국민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합당한 이유’와 ‘적법한 절차’가 필요하다.

여기서 합당한 이유와 적법한 절차는 동시에 만족되어야 하는 필수적인 요건으로 본 사건의 희생자가 총살당할 합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총살집행은 법치국가에서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당시 국군이 적에게 협력한 민간인을 처벌하는데 적용할 수 있는 법으로는 「국방경비법」⁶⁹⁾, 「국가보안법」⁷⁰⁾,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



한특별조치령」⁷¹⁾, 「계엄하군사재판에관한특별조치령」⁷²⁾ 등이 있었는데, 형(刑)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군사재판과 그 판결에 의한 집행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본 사건의 희생자가 군사재판을 받았다는 근거는 그 어디에도 없으며 본 사건의 희생자들이 위에서 나열한 법을 위반하였다는 명백한 증거도 없다.

전시 중 공비토벌작전의 임무를 부여받은 국군이 자국(自國)의 민간인을 보호하기는 커녕 정당한 법적 절차와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집단총살한 행위는 비무장 민간인 집단을 일방적으로 살해한 행위로밖에 볼 수 없다. 이것은 대량학살에 가까운 것이며⁷³⁾ 일종의 전쟁범죄다.⁷⁴⁾

본 사건 발생 당시, 우리나라는 1948년 12월 9일 파리에서 작성된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 of Genocide)⁷⁵⁾이 발효 중이었는데, 이 협약에 의하면 집단살해는 반드시 처벌하게 되어 있다.

- 69) 「국방경비법」은 1945년 7월 5일 공포되어 1962년 1월 20일 「군형법」이 제정되면서 폐지되었는데 법령호수가 없고 제정한 적도 공포된 적도 없는 등 입법절차 상의 문제에 관하여 많은 논란이 있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1998년에, 헌법재판소는 2001년에 이 법의 규범력을 인정하였다. 이 법은 군형법의 형식을 갖고 있는데 이적행위(제32조)와 간첩행위(제33조)에 해당하는 죄에 대해서는 민간인에 대한 재판권을 군법회의에 부여하고 단신으로 재판을 끝낼 수 있게 하였다. 본 사건에 적용시킬 수 있는 법 조항은 다음과 같다. 제32조(적에 대한 구원, 통신 연락 또는 방조) : 직접, 간접으로 무기, 탄약, 양식, 금전 기타 물자로서 적을 구원 혹은 구원을 기도하거나 또는 고의로 적을 은닉 혹은 보호하거나 또는 적과 통신 연락 혹은 적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여한한 자든지 군법회의의 판결에 의하여 사형 또는 타 형벌에 처함. 제33조(간첩) : 조선경비대의 여한한 요새지, 주둔지, 숙소 혹은 진영 내에서 간첩으로서 잠복 또는 행동하는 여한한 자든지 고등군법회의에서 차를 재판하며, 유죄 시에는 사형에 처함.
- 70) 제1조 : 정부를 참칭하거나 변란을 야기할 목적으로 결사 또는 집단을 조직한 자 또는 그 결사 또는 집단에 있어서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자. 제2조 : 전조에 규정한 결사를 지원함을 목적으로 하는 결사 또는 집단을 조직한 자 또는 그 결사, 집단에 있어서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자. 제3조 : 전2조의 결사 또는 집단의 지령이나 전2조의 목적을 지원할 목적으로서 그 목적사항의 실행을 협의, 선동 또는 선전하거나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자. 제4조 : 전3조의 죄를 범하게 하거나 정을 알고 총포, 탄약, 도검 또는 금품 기타의 재산상 이익을 공급 또는 약속하거나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3조의 죄를 방조한 자.
- 71) 제2조 : 본령에 있어서 비상사태라 함은 단기4283년6월25일 북한괴뢰집단의 침구에 인하여 발생한 사태를 칭한다. 제4조 : 비상사태에 승하여 죄의 죄를 범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중략) 5. 적에게 무기, 식량, 유류, 연료 기타의 물품을 제공하여 적을 자진 방조한 행위.
- 72) 제2조 : 계엄선포지역내의 고등군법회의(이하 계엄고등군법회의라 약칭한다)는 장교 3인 이상의 심판관으로써 구성하고 그 중 1인은 군법무관이여야 한다. 계엄고등군법회의의 설치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판사로 하여금 군법무관의 직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 73) 대량 학살이란 정당한 법적 절차나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 국가권력 및 그와 연관된 권력체가 정치적 이유에 의해 자신과 적대하는 비무장 민간인 집단을 일방적으로 살해하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다. 김동춘, 『전쟁과 사회』, 돌베개, 2000, 205쪽.
- 74) 제2차 세계대전 후의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과 극동국제군사재판은 ① 평화에 대한 죄 ② 일반적인 전쟁범죄와 함께 ③ 인도에 대한 죄를 전쟁범죄라고 인정하였고, 국제연합 국제법위원회도 1950년의 보고에서 이를 국제법상의 범죄로 규정하였다. 본 사건은 일반 인민에 대한 살육(殺戮)·집단살해·노예적 혹사·추방 등의 비인도적 행위나 정치적·인종적·종교적 이유에 의한 박해행위를 한 인도에 대한 죄(crimes against humanity)를 적용시킬 수 있다.
- 75) 국회동의일 : 1950년 09월 04일, 발효일 : 1951년 01월 12일.(조약 제1382호)

나. 소결

본 사건을 작전 현장에서 지휘한 사람은 국군 11사단 20연대 5중대장 권준옥 대위다. 당시의 지휘·명령계통은 국군 11사단장 최덕신 준장 → 20연대장 박기병 대령 → 2대대장 유갑열 소령 → 5중대장 권준옥 대위로 이어진다. 최덕신의 견벽청야작전 방침에 의해 전개된 공비토벌작전은 영남과 호남의 많은 주민들이 집단희생 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본 사건은 국내법상으로는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불법행위다. 당시 군의 일반적 지휘·명령체계를 고려할 때, 본 사건과 같이 하급부대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민간인 희생사건의 책임은 단지 상급부대 만이 아니라 최종적으로는 국가에 귀속된다고 할 수 있다.

6. 유족의 피해

사건 발생 이후 유족들이 입은 피해의 대부분은 가족의 가장인 아버지나 남편이 사망함으로써 결손가정이 되면서 초래한다. 이 사건 이후 어머니가 자녀들을 시댁에 남겨둔 채 재가(再嫁)를 하는 경우도 상당 수 있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린 자식을 책임지는 경우 더욱더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남은 자녀들은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유자녀들이 교육을 받지 못하게 되어 직업 선택의 폭은 좁을 수 밖에 없었으며, 현재 까지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쟁 중 발생한 민간인 희생사건은 지역의 공동체를 파괴 하였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빼앗았다. 유족들은 아직까지 영문도 모른 채 죽어간 부모형제들에 대한 고통스러운 기억과 피해로 인해 신음하고 있었으며, 5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재가한 어머니와 대면하기를 거부하는 아들의 모습도 발견할 수 있었다.

V. 결론 및 권고

1. 결론

가. 선병대 외 30명은 한국전쟁 중이던 1951년 1월 20일 공비내통혐의가 있다는 이유로 국군 제11사단 20연대 2대대 5중대(이하 5중대) 군인들에 의해 전라남도 나주군 세지면 오봉리 동창교 일대에서 집단총살 당하였다.

나. 위 사건의 경위를 보면, 5중대가 1951년 1월 20일 세지면 지서 경찰관, 세지면장, 구국총력연맹원, 지역유지 등과 함께 나주군 영산포에서 세지면으로 진주하던 중 길을 가던 행인 2명을 총살하고, 지역주민 백형렬을 체포하여 세지면 오봉리(동창마을)로 진



입하였다. 5중대는 경찰 등과 함께 오봉리(동창마을)·벽산리(섬말마을)를 집집마다 수색하여 주민 200여 명을 동창교 아래 만봉천 개천가에 강제로 집결시킨 뒤 백형렬, 노점순과 그 아기(당시 3살)를 먼저 총살하였다. 이후, 집결한 마을주민들 중에서 군·경 가족들을 제외하고 청·장년층의 남자들을 선별하여 동창교 인근 신북여관 옆 밭으로 이동시킨 후 집단총살하였다.

- 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선병대·홍석수·백정상·노태섭·조인규·나순채·서범수·조동규·홍두환(이상 다-2596), 김경용·김갑술(이상 다-2596, 다-8903), 정도집(다-6647, 다-10001), 승갑동(다-7219), 황매임·추경화·추양오·추덕임(이상 다-8233), 유우옥(다-8781), 나순길(다-10033), 김연규(다-10308), 조동규(다-10449), 양금득(다-10570), 박장두·이태관·노점순·노점순의 딸·정판일·김만용·이목미·임영오·백형렬(이상 미신청) 등 31명이 희생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 인원과 '나주시 세지면 동창양민학살사건 진상조사추진위원회'에서 성명을 확인한 희생자를 포함하면, 본 사건의 희생규모는 최소 74명에서 최대 140여 명으로 추정된다.
- 라. 희생자들은 대부분 나주군 세지면 오봉리·벽산리에서 농업에 종사하던 주민들이었다. 이 중에는 영암군 금정면 등에서 온 피난민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희생자들은 전원 비무장·비전투원인 민간인이었음이 확인되었다. 이들은 대다수가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을 할 청·장년층의 남자들이며, 노인·여성·어린이·유아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
- 마. 사건 발생지역은 지리적으로 빨치산 활동이 활발한 곳이었기 때문에 당시 '낮에는 대한민국, 밤에는 인민공화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치안이 불안정한 미 수복지구였다. 5중대는 이들 지역 주민들이 공비들에게 협조하거나 포섭되었다는 의심 아래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을 할 청·장년층의 남자들을 선별하여 집단총살하였다. 본 사건은 교전 중에 발생하지 않았으며, 국군이 경찰, 우익인사 등 지역의 협조자들과 함께 마을로 들어온 점, 주민을 집결시킨 후 청·장년층 남자들을 선별하였다는 점 등으로 보아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이 아니라 어느 정도 의도된 사건으로 판단된다.
- 바. 제5중대는 사건의 희생자들을 집단총살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확인과정도 거치지 않았고, 적법한 절차도 지키지 않았다. 당시 전시 계엄령 하에서 민간인의 범죄행위가 있을 경우, 「국방경비법」, 「국가보안법」,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 「계엄하군사재판에관한특별조치령」 등이 적용될 수 있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는 그 어떠한 법령도 적용하지 않았다. 전시작전 중이라 하더라도 비무장 민간인을 정당한 법적 절차나 재판을 거치지 않고 집단총살한 행위는 국제법상으로도 전쟁범죄에 해당한다.

- 사. 본 사건의 직접적인 가해자는 현장에서 임무를 수행하던 국군 제11사단 20연대 2대대 5중대장(대위 권준옥)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작전상황, 명령내용 등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못했다. 본 사건 발생당시 지휘·명령계통은 국군 11사단(사단장 최덕신) → 20연대(연대장 박기병) → 2대대(대대장 유갑열)였다. 따라서 이들 상급부대 및 지휘관들이 사건 전후에 공비토벌 작전에 대한 지휘·명령권을 행사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이 사건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당시 군의 일반적 지휘·명령체계를 고려할 때, 본 사건과 같이 하급부대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민간인 희생사건의 책임은 단지 상급부대 만이 아니라 최종적으로는 국가에 귀속된다고 할 수 있다.
- 야. 이 사건은 국군이 작전 지역 내의 민간인들을 불법적으로 집단총살한 사건이었다. 전시 작전 중의 긴급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아무런 확인과정이나 적법절차를 따르지 않고 비무장 민간인을 집단총살한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이다. 희생자들의 억울한 죽음은 물론, 유족들 또한 불시에 가족구성원을 상실한 이후 지금까지 경제적 고통과 심리적 위축을 크게 받으면서 살아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2. 권고

가. 피해자 구제와 화해

국가는 희생자 유족들에게 성의 있는 사과를 하고, 그들의 명예회복과 피해구제를 위한 방법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족들이 추진해 온 위령행사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화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나. 호적정정과 제도개선

먼저 희생자들의 호적에서 사망 날짜 및 장소를 명확히 기재한 경우가 거의 없으므로, 국가는 유족들이 원할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서 정정할 것을 권고한다.

국가는 전시(戰時)와 평시(平時)를 막론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人權)이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비록 전시중이라고 하더라도 적에게 협력하였다는 혐의만으로 민간인을 희생시키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령을 국제법 수준으로 정비할 것을 권고한다.

다. 역사기록 수정과 평화인권 교육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는 각종 공간사(公刊史) 기록을 수정하여 위 진실규명 내용을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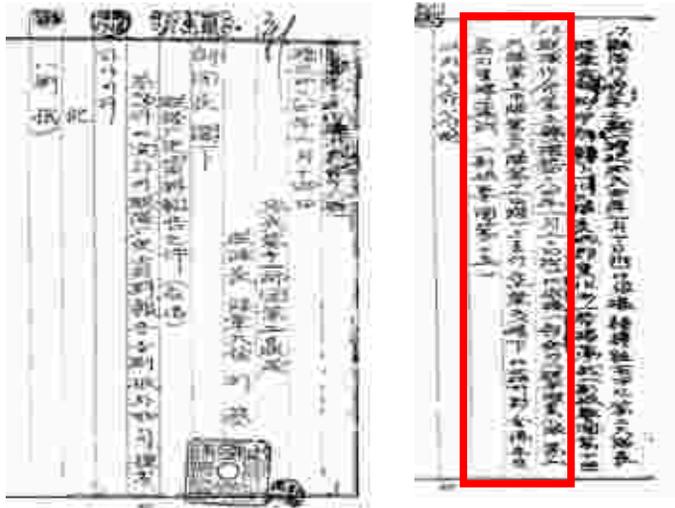


하고, 향후 국사교과서 등에 한국전쟁 시기 발생한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 내용을 수록할 것을 권고한다.

국가는 또한 교육을 통해 국가위기 또는 전쟁 상황에서 군·경찰 등 국가권력 기관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국군 대상의 평화 인권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길 권고한다.

별첨 1

연대역사자료보고지건(1951.2.14)



步 十一師 二十聯作教乙發第十六號/ 檀紀 四二八四年 二月 十四日/ 步兵第十一師團第20聯隊/ 聯隊長 陸軍大領 朴基丙/ 師團長 閣下/ 聯隊歷史資料報告之件(応信)/ 首題件에 關하여 聯隊歷史資料報告를 別紙와 如히 提出하나이다

作戰關係

18. 聯隊作命 第5號(檀紀 四二八四年 二月 十四日附)에 依據 一部兵力(聯本 搜索小隊, 第2大隊 第5中隊, 第3大隊 第11中隊)으로서 空軍支援下에 羅州郡 金佛寺 及 岩川里 掃蕩戰(別紙 要圖 第15)

보11사20연작교을발제16호/ 단기 4284년 2월 14일/ 보병제11사단제20연대/ 연대장 육군 대령 박기병/ 사단장 각하/ 연대역사자료보고지건(응신)/ 수제건에 關하여 연대역사자료보고를 別지와 여히 제출하나이다

작전관계

18. 연대작명 제5호(단기 4284년 1월 20일부)에 의거 일부병력(연본 수색소대, 제2대대 제5중대 제3대대 제11중대)으로서 공군지원하에 나주군 금불사 및 암천리 소탕전(별지 요도 제15)



별첨 2

나주군 다도면일대 소탕전 요도 1

